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중앙건설심의회운영규정 등 제 규정을 폐지하고 통합규정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내용은 당 규정중 「제4장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와 경력 인정 등」이다.

제39조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자격과 관련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영 제51조의 2 제1항 별표 3에 의한 감리원자격과 관련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0조 [학력인정범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학력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자
 - 가.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가. 기능계 건설기술자

설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라.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자

가. 전문대학(5년제 고등학교 포함)에서 건설 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다.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학교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자

나. 기술계 건설기술자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또는 기능사 *표시)	기능사보
기 계	배관·용접	배관용접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 용접, 특수용접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 접, 특수용접
토 목	-	-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 축	건축시공, 목공	건축시공, 목재 창호	*건축제도, 조적, 마장, 타일, 온수온 돌, 구들온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 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 축도장, 도배, 철근, 빙수	조적, 마장, 타일, 온수온돌, 구들온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 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빙수
국토개발	-	-	조경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환경	-	-	*환경	-

나. 기술계 건설기술자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 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토 목	토목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의장	건축설비 건축 의장

가.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건설관련 건설기술양성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경력인정기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촉지	도시계획 조경 촉지	조경 촉지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교통	교통	교통	-

나) 인정범위

구 분	학력경력자	인정가능한 범위
특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

* 참고

1) 위 표의 학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졸업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

가) 등급의 구분 : 학력·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해당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의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한다.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 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호 나목을 준용한다.

[별표 5]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분야	건설기술관련학과
토목	토목과,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농업토목과, 농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교육과, 해양토목과, 해양토목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건설공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학과
건축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설비공학과, 실내건축과, 건축공학교육과, 건축교육과, 건축미술과, 농업건축과, 건설공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건축공예과, 건축토목과
기계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동력기계공학과, 열냉동관리학과, 냉동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기관과, 기관학과, 기관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제어기계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우주항공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어기계축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융합과
국토개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 조경과, 조경학과, 환경조경과, 국제자원개발학과, 측지공학과, 지적학과, 조형공학과, 녹지조경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환경조경학과, 관광조경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관상원예과, 관상원예학과, 임업과, 화훼원예과
안전관리	산업안전과, 산업안전학과, 산업안전관리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위생학과, 선업보건학과, 산업환경학과
교통	교통공학과, 항공경영학과, 항공관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환경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대기과학과, 환경보호학과, 환경보건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공업과, 환경관리과, 환경위생학과
기타	지질학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정보학과, 항공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공학과, 항공탐사공학과, 항공통신정보공학과, 전파공학과,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재료금속공학과, 항공재료공학과, 공업화학과, 회화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공업경영학과, 정밀공업화학과, 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조선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자원학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비고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부 통계년도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3. 위 표에서 "기타분야"는 감리원의 자격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됨

[별표 6] 건설기술경력인정기준

1. 근무분야 경력에 따른 인정등급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계획·설계·감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2)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를 장교 또는 장기하시관으로서의 군복무를 한 자	100%
2등급	건설관련분야에서 교직경력이 있는 자(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	80%

2. 전문분야 경력에 따른 기술경력 인정등급

(설계 등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한함)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해당전문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90%
2등급	해당전문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60%
3등급	해당전문분야 이외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 이외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40%

* 전문분야의 종류 : 토질 및 기초, 구조, 품질시험, 건설안전, 교통,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측량, 지질조사, 건설견적,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농어업토목,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 기계설비, 발전설비, 전기설비 등 23분야